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요약 및 추가설명서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 따릅니다.

- 이 설명서는 고객님의 상담하신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와 관련하여 판매사가 고객님의 안내해야 하는 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개별 종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5~8 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교부 받으신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주의] 고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 작성일	고객님께 상품설명서를 통해 안내드린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품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직원 성명 (서명/날인)

본 상품은 채권 등 채무증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 수익구조가 정기예금과 유사하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예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또한 비상장 증권으로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채권의 원금상환여부는 국가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상품 유형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유동성 위험	중도환매 가능		중도환매 불가능	판매사가 부여한 위험등급	6등급 매우낮은위험 (개별운용자산상품설명서참조)
	비용발생	비용없음			
		○			
상품의 내용	판매직원이 제공한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각 상품의 위험등급은 개별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채무증권/단기상품/예치금 위험등급 분류기준	신용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BBB+ ~ BBB-)	B+ 이하 또는 무등급	위험선호도가(매우)높은투자자를위한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자산가치변동에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 ~ A-) 회사채(BB+ ~ BB-) 기업어음/전단채(B+이하 또는 무등급)	BB+ ~ BB-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 AA-) 회사채(BBB+ ~ BBB-) 기업어음/전단기사채(A3+ ~ A3-)	BBB+ ~ BBB-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회사채(A+ ~ A-) 기업어음/전단기사채(A2+ ~ A2-) 파생결합사채(A+ ~ A-)	A+ ~ A-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회사채(AAA ~ AA-) 특수채(AA+ ~ AA-)/은행발행금융채(AA+ ~ AA-) 기업어음/전단기사채(A1) 기간물RP/발행어음(AA-이상 기간물) 파생결합사채(AAA ~ AA-) 예치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국공채 등주1), AAA ~ AA-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국고채/통안채/지방채 특수채(AAA)/은행발행금융채(AAA) 일일물RP/발행어음(AA이상 일일물) 은행발행CD, 콜론, 중금겸영은행 발행어음 예치금(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 예·적금)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 금융상품과의 비교(1) 후면(계속)

상품	내용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요약 및 추가설명서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유사 금융상품과의 비교(2)

상품	내용
통안채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전력공사채권 등이 있음
회사채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기업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함. 회사채가 주식과 다른 점은 일정한 상환기한이 있고, 기업이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회사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에 주식보다 앞서 상환된다는 점임
신종자본증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함. 통상 만기는 30년 이상 이고, 변제우선 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임.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하며, 확정된 금리와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거래방식	내용
장내채권	다수의 매도, 매수주문이 한곳에 집중되어 상장종목 채권이 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 장내시장)’
장외채권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 상호간, 증권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에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전 종목이 개별적인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 Market)’.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자 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장내거래 보다는 장외거래가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상품 개요 및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일반 국채와는 달리 금리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이나 중도환매 시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년, 20년 물의 복리채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 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며 고객은 발행일 기준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해당월의 발행물에 대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청약(중도환매) 시 신청한 청약(중도환매)금액의 일부만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의 의무 보유기간 이후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지급, 중도인출 등의 법정사유에 의한 환매의 경우 의무 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 연 복리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환매 시 원금과 표면금리에 단리로 적용된 미지급 경과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소유권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 제외)이 불가하며,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요약 및 추가설명서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고객님의 권리 보호 사항 안내

안내 사항	내용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 범위가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은 이 자료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위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 해당 보관기간 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2021년 5월 10일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계약 체결</u>의 경우, 투자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채권은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님(고난도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기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단,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주1) 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나. 걱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2항) 다.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제3항) 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0조 제1항) 마.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1조)
구속행위의 금지	퇴직연금 계좌 신규일 기준 1개월 이내 대출 실행 요청 시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입금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추가입금 후 1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계획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영업점 직원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가입 후 2영업일간의 상품 가입을 취소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채권은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상품이 아님(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요약 및 추가설명서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주요투자위험

• 일반적 투자위험

동 퇴직연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신용위험

발행자의 지급불능으로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원금이나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금성 제약의 위험

본 상품은 발행 후 유통시장에서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자금 회수는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만 중도환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도환매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신청금액이 전액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복리효과가 적용되지 않아 만기 보유 대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기종결 위험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세제 및 법률상 위험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본 증권은 발행사의 신용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환 가능성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퇴직연금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국채는 원리금보장상품인가요?

A. 아니요. 개인투자용국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행자가 대한민국 정부이며,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은 없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과 확정된 이자(표면금리+가산금리)가 지급되는 구조이고 중도환매시에도 표면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중도환매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상품의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복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가 지급됩니다. 자발적신청에 의한 중도환매의 경우 신청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에 따라 신청 금액 전부를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중도환매 시 환매 일수는 몇 일이 소요되나요?

A. 중도환매일(자발적신청에 의한 환매의 경우 매월 20일)로부터 D-7영업일 ~ D-3영업일의 기간동안 중도환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에 따라 중도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Q4 청약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발행일기준 D -7 영업일 부터 D -3 영업일 까지(5영업일간) 09:00 ~ 16:00 가 청약 신청의 기간 입니다. 같은 기간내에 이미 접수한 청약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형IRP에 개인투자용국채 보유시 연금지급에 제한이 있나요?

A.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한 개인형IRP의 경우 연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이미 연금 개시된 IRP 계좌에서는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04415-3609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투자위험

원금보장구분

원금비보장

투자위험

최대손실가능금액

원금전액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채권은 발행 후 유통시장에서 매매·양도가 불가능하여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채권의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판매사가 부여한 위험등급 - 6등급(매우낮은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신한은행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분류한 본 상품의 위험등급은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입니다.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정보는 [위험등급산정기준^{주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개요

가입 대상	퇴직연금 DC, IRP 보유 개인	발행방법	공모
상품 종류	복리채 : 10년물	원금 및 이자 지급방법	• 원금 - 지급시기 : 만기일 • 만기이자 - 지급시기 : 만기일 - 이자계산 :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 이율에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 ※ 만기이자(세전) : 원금 × [(1+표면금리+가산금리)ⁿ - 1] (n = 만기)
청약 및 발행 (발행일 = D)	• 청약 - 접수채널 : 영업점, 신한 슈퍼SOL - 신청기간 : 발행일(D) 기준 D-7 영업일 부터 D-3 영업일 까지(5영업일간) 09:00 ~ 16:00 (단, 발행일이 은행휴무일이거나 법정휴무일인 경우 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가능) • 배정 - 배정일 및 결과통지 : 청약기간 종료일(D-3)로부터 2영업일 후(D-1) 배정 결과 통지 (알림톡) (배정결과 통지 후 미배정 청약신청금 반환) - 배정 한도 : 월간 발행한도 내 배정 (신청한 청약금액의 일부만 배정 가능) - 배정 기준 : 해당월 청약총액이 1)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 청약액 일괄 배정 2) 월간 발행한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 ① 단계 : 매월 청약상황에 따라 모든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 일괄배정 * 기준금액은 300만원이며, 청약 현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 (단, 기준금액이 10만원일 경우에도 한도초과 시 추첨을 통해 배정) ② 단계 : 잔여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 - 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발행 - 발행일 : 매월 20일 (단,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휴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에 잔고 입고) - 발행한도 : 발행 한도는 발행 직전 월 재정경제부의 월간 발행계획에 따름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04415-3609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중도환매 및 유의사항	• 중도환매의 신청 - 중도환매 가능상품 : 매입한 본 상품의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13개월차)' 경우 (단, 퇴직금 지급, 중도인출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도 중도환매 신청 가능) - 중도환매 신청방식 : 월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 배정 방식 ※ 취소 가능성 : 신청 월 한도 내 선착순 처리되며, 한도 초과 시 신청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중복 신청 가능 : 종목별 보유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복 신청 가능 ※ 결과 확인 : 신청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뒤 발송되는 알림톡과 매매 내역을 통해 확정여부 확인 - 중도환매 한도금액 : 직전월 재정경제부의 월간계획에 따르며,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의해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중도환매 가능금액 : 매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환매 신청 가능하며, 일부 신청시 10만원 단위로 중도환매 신청 가능 - 중도환매 신청기간 : 매월 중도환매일 (매월 20일, 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환매) 기준, 7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철회 가능) ※ 단 퇴직금 지급, 중도인출 등 법정 사유에 의한 중도환매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가능
	• 중도환매 시 이자지급 -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지급 - 중도환매 (지급) 일 : 매월 20일 (단, 환매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 및 연 복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차익이 발생되지 않음

* 표면금리 :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낙찰금리 적용
** 가산금리 : 재정자금수요 및 국채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공표

발행자에 관한 내용

발행자에 관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	신용등급/재무정보	없음(국채)
------------	---------	-----------	--------

종목 주요내용

10년물 (복리채)	종목명	개인투자용국채 04415-3609	발행방법	공모
	표면금리	연 4.415 %	가산금리	연 0.35 %
	발행일자	2026.09.20	만기일자	2036.09.20
	총 발행한도(원)	110,000,000,000	기타사항	해당없음

청약 일정

청약 신청기간	2026.09.09 ~ 2026.09.15	청약 배정 통지일	2026.09.17
발행일	2026.09.20	입고일(등록일)	2026.09.18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04415-3609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중도환매에 관한 사항	- 유동성 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중도환매는 본 상품의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3개월 차) 월간 중도환매 한도금액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법정 사유에 의한 환매 제외), 선착순 방식으로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 중도환매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 연 복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도환매 시 원금과 표면금리에 단리로 적용된 미지급 경과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열회사 발행증권 여부	본 증권의 발행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신한은행과 계열관계가 없습니다.
담보대출 가능 여부	본 증권은 신한은행에서 대출 목적으로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며, 본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원금손실위험	이 금융상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나, 국가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품의 특징,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고객님의 투자 목적과 투자 성향, 상품의 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책임원칙	퇴직연금은 고객의 운용지시를 받은 은행이 해당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신탁계약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험등급 산정기준

※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등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 지침의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위험등급	채무증권/단기상품/예치금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BBB+ ~ BBB-)
2등급 높은위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 ~ A-) 회사채(BB+ ~ BB-) 기업어음/전단채(B+이하 또는 무등급)
3등급 다소높은위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 AA-) 회사채(BBB+ ~ BBB-)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A3+ ~ A3-)
4등급 보통위험	회사채(A+ ~ A-)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A2+ ~ A2-) 파생결합사채(A+ ~ A-)
5등급 낮은위험	회사채(AAA ~ AA-) 특수채(AA+ ~ AA-)/은행발행금융채(AA+ ~ AA-)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A1) 기간물RP/발행어음(AA-이상 기간물) 파생결합사채(AAA ~ AA-) 예치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6등급 매우낮은위험	국고채/통안채/지방채 특수채(AAA)/은행발행금융채(AAA) 일일물RP/발행어음(AA이상 일일물) 은행발행CD, 콜론, 중금경영은행 발행어음 예치금(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 예·적금)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04415-3609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손실시나리오

- 채권 상품에 가입 후 발행자의 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시 상환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수 있으며, 원리금의 일부 혹은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원리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신 후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시나리오	손실(이익)예시 (투자원금 1억원 가정, 세전)	비고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없이 만기일에 정상 해지되는 경우	1억원 + 투자기간 운용손익	만기 해지 (최대이익 가능액)
채무조정, 파산절차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이 신탁원본의 70%인 경우	30백만원 손실(30% 원금손실)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
채무조정, 파산절차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이 신탁원본의 0%인 경우	1억원 손실(전액 원금 손실)	